

제 1844 호
1994. 8. 25.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원 중
편집인 : 공 보 관 김 우 석
전 화 : 731-8111~3
인 색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 |
|---|---|
| ● 고 시 | |
| 제 1994-277 호 사료성분등록 | 3 |
| 제 1994-278 호 사료성분등록변경 | 3 |
| ● 조례안입법예고 | |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69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료정수조 래중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 |
| ● 규칙안입법예고 | |
| 서울특별시공고 제 1994-268 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시행규 칙중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5 |

(이면계속)

| | | | | | | | | | |
|---|--|--|--|--|--|--|--|--|--|
| 공 | | | | | | | | | |
| 람 | | | | | | | | | |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로서로 고통분담, 고루고루 행복분담”

● 구 고 시

| | | |
|-------------|----------------------------|----|
| 제 1994-26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실시계획인가(종로) | 6 |
| 제 1994-28 호 |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실시계획인가(서초) | 8 |
| 제 1994-2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초) | 8 |
| 제 1994-39 호 | 도시계획시설(철도)지적승인및고시(송파) | |
| 제 1994-39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노원) | 9 |
| 제 1994-39 호 |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구로) | 9 |
| 제 1994-40 호 | 하천부속물점용허가(송파) | 10 |
| 제 1994-40 호 |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동대문) | 10 |
| 제 1994-41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중랑) | 10 |
| 제 1994-49 호 |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자지정(강남) | 11 |
| 제 1994-60 호 |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성북) | 12 |

● 구 공 고

| | | |
|--------------|--|----|
| 제 1994-113 호 | 전문건설업상속인가(양천) | 12 |
| 제 1994-132 호 |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안)공람공고(강서) | 13 |
| 제 1994-140 호 | 주택개량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폐지및사업시행인가폐지 공람공고(마포) | 13 |
| 제 1994-162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구로) | 14 |
| 제 1994-165 호 |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구로) | 15 |
| 제 1994-177 호 |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결정공람공고(종로) | 16 |
| 제 1994-267 호 | 전문건설업면허취소(서초) | 16 |
| 제 267 호 |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 17 |

● 인 사 발 령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4-277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단미 및 배합사료의 성분등록사항을 갈

은 법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8. 25

서울특별시장

1. 등록업체명: (주)유성농축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275-2
 대표자: 박기택

등록사료(1종): 캐나다에서 수입

| 등록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사용범위 | 사료의 성분량 |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슘 | 수분 | 조섬유 | 조회분 |
| 서울-587 | 수입단미 사료 | 알팔파류브 | 가축조사료용 | 15.5% 이상 | -% 이상 | -% 이상 | 12.0% 이하 | 22.0% 이상 | 12.0% 이하 |

2. 등록업체명: (주)원종사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35-5

대표자: 최우창

등록사료(1종): 스페인에서 수입

| 등록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사용범위 | 사료의 성분량 |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슘 | 수분 | 조섬유 | 조회분 |
| 서울-588 | 수입배합 사료 | 육성광어용 2호 사료 | 생후3개월후 부터 | 51.0% 이상 | 10.5% 이상 | 1.85% 이상 | 1.2% 이하 | 1.5% 이하 | 12.0% 이하 |

3. 등록업체명: (주)선진애드
 소재지: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동 256-41

대표자: 황종근

등록사료(2종): 미국에서 수입

| 등록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사용범위 | 사료의 성분량 |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슘 | 수분 | 조섬유 | 조회분 |
| 서울-589 | 수입단미 사료 | 발효사료 1호 | 배합 사료 제조원료용 | 24.0% 이상 | -% 이상 | -% 이상 | 8.0% 이하 | 3.0% 이상 | 6.0% 이하 |
| | | (MICRO-8000) | | | | | | | |
| 서울-590 | 수입단미 사료 | 발효사료 2호 | 배합 사료 제조원료용 | 10.0% 이상 | -% 이상 | -% 이상 | 8.0% 이하 | 3.0% 이상 | 4.0% 이하 |
| | | (B. F-2000) | | | | | | | |

●서울특별시고시제1994-278호

사료성분등록변경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변경사항을 같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8. 25

서울특별시장

○ 등록업체명: 금학수산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107
대표자: 오청일

등록사료(3종): 일본에서 수입

| 구분 | 등록번호 | 사료의 종류 | 사료의 명칭 | 사료의 사용범위 | 사료의 성분량 | | | | | |
|----|------|--------|---------------|---------------|---------|------|------|------|------|-------|
| | | | | | 조단백 | 조지방 | 칼슘 | 인 | 조섬유 | 조회분 |
| 변전 | 229 | 수입배합사료 | 큰뺨장어사료(성만용) | 방양90일 이후-출하 | 48.0% | 3.0% | 2.3% | 1.2% | 1.0% | 17.0% |
| | | | |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하 | 이 하 |
| 경후 | 229 | " | 큰뺨장어용사료(성만용) | " | 48.0% | 3.0% | 2.3% | 2.7% | 1.0% | 17.0% |
| | | | |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하 | 이 하 | 이 하 |
| 변전 | 291 | 수입배합사료 | 새끼뺨장어사료(백자용) | 방양이후 10~30일까지 | 49.0% | 3.0% | 2.3% | 1.2% | 1.2% | 16.0% |
| | | | |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하 | 이 하 |
| 경후 | 291 | " | 어린이뺨장어용(백자용) | " | 49.0% | 3.0% | 2.3% | 2.7% | 1.0% | 16.0% |
| | | | |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하 | 이 하 | 이 하 |
| 변전 | 292 | 수입배합사료 | 중간뺨장어용사료(흑자용) | 방양이후 31~80일까지 | 48.0% | 3.0% | 2.5% | 1.3% | 1.2% | 16.0% |
| | | | |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하 | 이 하 |
| 경후 | 292 | " | 육성뺨장어용사료(흑자용) | " | 48.0% | 3.0% | 2.5% | 2.7% | 1.2% | 16.0% |
| | | | | | 이 상 | 이 상 | 이 상 | 이 하 | 이 하 | 이 하 |

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공고제1994-269호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입법예고

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사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

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8. 25

서울특별시장

1. 개정취지

서울특별시에서 저소득층 여성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을 목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부녀복지관의 이용대상이 저소득층 여성의 감소와 중산층 이상 여성의 증가 추세에 있어 복지관 사용료를 시민 소

| | | | | |
|--|-------|---|--------|---------|
| <p>독수준에 맞추어 현실화함으로써, 복지관 운영의 대실화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p> | | | | |
| <p>2. 주요골자</p> | | | | |
| 구 분 | 단 위 | 사 용 료 | | 비 고 |
| | | 현 행 | 조 정 안 | |
| 기 술 교 육 수 강 료 | 1인 1월 | 3,000원 | 7,000원 | 주 5회 기준 |
| 생 활 · 문 화 수 강 료 | " | 5,000원 | 7,000원 | 주 1회 기준 |
| 유 아 보 육 료 | " | 2,000원 | 5,000원 | |
| <p>3. 의견제출</p> <p>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4. 9.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특별시장(참조 부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31-6486~9).</p> <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 <p>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p> | | <p>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 시행규칙개정규칙안입법예고</p> <p>서울특별시립근로자후생시설설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서울특별시법제사무처리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4. 8. 25 서울특별시 장</p> <p>1. 개정취지</p> <p>부너복지관 이용자결 기준을 완화하여 자격 미달로 복지관 이용이 제한된 부너복지 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기반 조성을 적극 지원코자 함.</p> | | |
|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width: fit-content; margin: 0 auto;"> <p>규칙안입법예고</p> </div> | | <p>●서울특별시공고제1994-268호</p> | | |
| <p>2. 주요골자</p> <p>가. 부너복지관 이용자결 개선</p> | | <p>개 선</p> | | |
| <p>현 행</p> <p>18세 이상의 서울 시내 거주여성(저소득부너자 우선)</p> | | <p>개 선</p> <p>18세 이상의 서울특별시내 거주여성(저소득부너자 우선)과 부너복지시설에 수용된 18세 미만 및 서울특별시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여성 중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여성</p> | | |
| <p>3. 의견제출</p> <p>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4. 9. 14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16절지를 세워서 작성)를 서울</p> | | <p>특별시장(참조 부너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731-6486~9).</p> <p>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p> | |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
자 성명), 전화번호

구 고 시

●종로구고시제1994-26호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 실시계획인가

1. 종로구고시 제94-15호(94. 6. 15)로 도
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종로구고시 제
94-18호(94. 6. 28)로 지적승인되었으며,
종로구공고 제1994-146호(94. 7. 7)로 공
람공고한 승인동 232-15~233-4간 도시계
획사업(도로·하수도) 실시계획을 도시계획
법 제25조 및 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를 종로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리파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이
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5

종로구청장

- 가. 사업시행지: 종로구 승인동 232-15~
233-4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승인동 232-15
~233-4간 도로개설공사
- 다. 사업개요: B=4m, L=80m
- 라.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
-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2년간
-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별
첨 조서
- 사. 토지 및 건물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조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별첨 조서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종로구청장

공사명: 승인동 232-15~233-4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

| 연 번 | 소재지 및주소 | 지 목 | 지적 (㎡) | 편입면적 (㎡) | 소 유 자 | | 권 리 자 | | 소유권이의의 권 리 명 세 고 | 비 |
|--------|---------------|--------|-----------|-------------|-------------------|---------------------------------|------------|----------------------------|---------------------|---|
| | | | | | 성 명 | 주 소 | 성 명 | 주 소 | | |
| 1 | 승인동 232-29 | 대 | 42.3 | 42.3 | 전주석 | 종로구 승인동 232-10 | | | | |
| 2 | 232-31 | 대 | 69.2 | 69.2 | | 미합중국 뉴욕 주 1137394가 41-06호 | 대한보 증보험 | 강남구 삼성동 141 (주)안양 지점 | 근저당권 | |
| 3 | 233-6 | 대 | 52.9 | 52.9 | 황찬호 | 강남구 압구정 동 1-5 한양④ 42-1303 | | | | |
| 4 | 233-12 | 대 | 11.9 | 11.9 | 서울대 교구유 지재단 | 중구 명동2가 1 재단법인 천 주교 | | | | |
| 5 | 233-13 | 대 | 22.9 | 22.9 | 서울대 교구유 지재단 | 중구 명동2가 1 재단법인 천 주교 | | | | |

| 연번 | 소재지 및 주소 | 지척 (m) | 지적 (m) | 권원면적 (m ²) | 소유자 | | 권리자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6 | 234-33 | 대 | 26.1 | 26.1 | 황찬호 | 강남구 압구정동 1-5 한양④ 42-1303 | | | | |
| 7 | 234-95 | 대 | 28.5 | 28.5 | 전주석 | 종로구 송인동 232-10 | | | | |

물 전 조 서

사업시행자 : 종로구청장

공사명 : 송인동 232-15~233-4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의종류 : 도시계획사업(도로·하수도)

| 연번 | 소재지 및 주소 | 물 전 종류 | 구 조 및 규 격 | 수용할 면 적 (m ²) | 소유자 | | 권리자 | | 소유권이외의 권리명세 | 비고 |
|----|--------------|-------------|---------------------|---------------------------|-----|--------------------------|-----|----|-------------|-------------------|
| | | | |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 |
| 1 | 송인동 232-10 | 전 물 | 슬레이트 / 철골 | 12.1 | 전주석 | 종로구 송인동 232-10 | | | | |
| 2 | 232-14 | 전 물 | 합 석 / 철 골 | 29.6 | 임승석 | 미합중국 뉴욕주 1137394가 41-06호 | | | | |
| 3 | 234-27 | 전 물 | 기 와 / 벽 돌 슬레이트 / 철골 | 14.7 | 전주석 | 종로구 송인동 232-10 | | | | |
| 4 | 234-33 233-6 | 담 장 | 블 록 조 H = 1.8 m | 15m | 황찬호 | 강남구 압구정동 1-5 한양④ 42-1303 | | | | |
| 5 | 232-10 | 세탁기 | 100kg 60kg | 1대 1대 | 김치선 | 동대문구 용두동 53-9 | | | | 영업권(이전) 상호: 88세탁 |
| | | 스노우 보일러 물탱크 | 100kg 200kg 5톤 | 1대 1대 1대 | | | | | | |
| 6 | 232-14 | 알미늄 | 10×5×630 | 8.5톤 | 박광섭 | 종로구 송인동 232-14 | | | | 영업권(이전) 상호: 동명알미늄 |
| 7 | 232-14 | 선 반 | 3.6m 2.7m | 1대 1대 | 신인철 | 종로구 동숭동 4-18 | | | | 영업권(이전) 상호: 동진교무 |

●서초구고시제1994-28호

도시계획사업(여객자동차터미널) 실시
계획인가

1. 건설부고시 제108호(75. 6. 23)로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결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19-3에 대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법 제31조의10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를 하였기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초구청 지역교통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니다.

1994. 8. 25

서 초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초구 반포동 19-3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공용 여객자동차터미널)

○명칭: 서울종합터미널

다. 면적 또는 규모

○대지: 62,088.6㎡

○건물: 170,541.78㎡-지하 4층, 지상 16층

라. 시행자의 주소: 서초구 반포동 19-3

시행자의 성명: 서울종합터미널(주) 대표이사 최석산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착공예정일: 1994. 10. 1

○준공예정일: 1997. 4. 30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해당 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의 주소·성명: 해당 없음.

아.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물 건 지 번 | 규 모 | 공공 시설물 신설 | 무 상 양 여 자 | 귀속관청 |
|-------------|----------|---------------|------------|------|
| 토 지 반포 19-3 | 1,333.4㎡ | 8m 관통도로 | 서울종합터미널(주) | 서초구 |
| 토 지 반포 19-3 | 856㎡ | 반포로 1차선 확보 도로 | 서울종합터미널(주) | 서초구 |

※ 규모: 사업실시 후 면적의 증감 있을 수 있음.

자. 관련도서: 생략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청 지역교통과(570-648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초구고시제1994-2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8. 25

서 초 구 청 장

1. 사업명: 재래시장 복합건물 건설사업

2. 사업자: 이수시장 송재국 외 180명
나산종합건설(주) 대표 백이호

3. 사업시행자의 위치·면적 및 규모

가. 건설위치: 서초구 방배동 816-1

나. 대지면적: 3,299.7㎡

다. 건축면적: 1,979.33㎡

라. 건축연면적: 24,084.595㎡

마. 건설규모: 판매시설(시장), 아파트 1동 88세대

4. 사업시행기간: 1994. 8~1996. 7.

● 송파구고시제1994-39호

도시계획시설(철도)지적승인및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94. 3. 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송파구 도시정비과(410-3385), 지적과 및 관할 동사무소(풍납 1·2동, 방이동)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5

송 파 구 청 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지적승인 조서

| 구분 | 시설명 | 세분의 시설 | 위 치 | 규 모 | 비 고 |
|----|-----|-------------------|------------------------------|----------------------|----------------|
| 결정 | 철 도 | 도 시 철 도 (본 선) | 강동구 암사동 504 일대~송파구 방이동 35 일대 | L=2,790m B=10~24m | 지하철 8호선 본선 신설 |
| 결정 | " | 도 시 철 도 (몽촌토성정거장) | 송파구 방이동 44 일대 | A=3,094㎡ | 지하철 8호선 정거장 신설 |
| 결정 | " | 도 시 철 도 (천호정거장) | 송파구 풍납동 473 일대 | A=1,852㎡ | " |
| 결정 | " | 도 시 철 도 (강동구청정거장) | 송파구 풍납동 504 일대 | A=1,271㎡ | " |

나. 관계도면: 송파구청 도시정비과, 지적과 및 관할동사무소 비치 도면과 같음.

나 대지면적: 2,311.50㎡

다. 사업규모: 아파트 1동, 68세대

라. 연면적: 8,590.79㎡

4. 사업시행기간: 94. 8~95. 11

● 노원구고시제1994-39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389-16 외 3필지의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8. 25

노 원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임성건설(주), (주)한농종합건설 대표이사 임채명(경북 접천시 흥덕동 251-3)
3. 사업시행지

가. 위치: 노원구 공릉동 389-16 외 3필지

● 구로구고시제1994-39호

주택건설사업자행정처분

다음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7조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하였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0조3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8. 25

구 로 구 청 장

| 고시내용 | | | | | | | |
|---------|---------|-----|-----------------|--------------------------------|---------------------|----------------------|--|
| 등록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 재 지 | 행정처분 | 처 분 사 유 | 근거법령 | |
| 85-15-3 | (주)유호건설 | 유재하 | 구로구 개봉동 403-203 | 영업정지2월 (94. 8. 17 ~ 10. 16) | 사업승인된 설계도면과 상이하게 시공 | 주택건설 촉진법 제 7 조 | |

●송파구고시제1994-40호
하천부속물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부속물의 점용허가를 처리하

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8. 25
송 파 구 청 장

허 가 내 역

| 허 가 연월일 | 위 치 | 지목 | 점용 면적 | 점용목적 | 점 용 기 간 | 허가를 받은 자 | |
|---------|--------|----|-------|----------------------------|--------------------|-------------------|------------------|
| | | | | | | 주 소 | 성 명 |
| 94. 8 | 삼실동 16 | 제방 | 12㎡ | L.N.G 배관공사에 따른 사무용 컨테이너 설치 | 94. 8~ 94. 9. 5 | 서울시 구로구 교척동 76-63 | (주)토성공영 조 재 관 |

●동대문구고시제1994-4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271호(94. 8. 1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아래 조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법 제 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 고시도면은 동대문구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5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지적승인조서

| 구분 | 등급 | 유별 | 번호 | 폭원(m) | 연장(m) | 시 점 | 중 점 | 비고 |
|----|----|----|-----|-------|-------|----------------|----------------|----|
| 결정 | 중로 | 1 | 365 | 20 | 260 | 동대문구 휘경동 328-1 | 동대문구 휘경동 319-9 | 신설 |

나. 고시도면: 동대문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음.

(93. 11. 10)로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 실시계획 공람공고를 한바,

●중랑구고시제1994-41호
도시계획사업(도로개설)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동 442-7 외 9필지에 대하여 중랑구청고 제1993-164호

2.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조와 동법시행령 제6조, 제27조, 서울시행정권한위임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중랑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

리과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
니다.

1994. 8. 25

중 랑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
동 442-7~446-16간

나.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개
설) 시행

명칭: 신내동 442-7~446-16간 도로개
설공사

다. 사업의 규모: 도로개설

폭 6m, 연장 133m

라.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마. 사업착공 및 준공연월일: 인가일로부터
36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재산: 별첨 토지조
서

사.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별
첨 토지조서

토 지 조 서

사업시행자: 중랑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중랑구 면목동 777-1

(신내동)

사업의 종류: 신내동 442-7~446-16간 도로개설공사

| 일련 번호 | 소재지 | 지목 | 지적 (㎡) | 편입 면적 (㎡) | 실제 이용 상황 | 소 유 자 | | 관 계 인 |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비 고 |
|----------|--------------|----|-----------|-----------------|----------------|----------|----------------|-------|--------------------------|--------|
| | | | | | | 성 명 | 주 소 | | | |
| 1 | 신내동 442-7 | 전 | 238 | 238 | 전 | 윤석원 | 중랑구 신내동 563 | | | |
| 2 | 440-3 | 전 | 171 | 171 | 전 | 윤석준 | 상 동 | | | |
| 3 | 441-5 | 대 | 45 | 45 | 대 | 강성복 | 중랑구 신내동 420-14 | | | |
| 4 | 441-12 | 대 | 83 | 83 | 대 | 상 | 동 | | | |
| 5 | 441-19 | 대 | 41 | 41 | 대 | 상 | 동 | | | |
| 6 | 441-17 | 대 | 116 | 116 | 대 | 상 | 동 | | | |
| 7 | 441-18 | 대 | 22 | 22 | 대 | 상 | 동 | | | |
| 8 | 443-2 | 전 | 67 | 67 | 전 | 길경자 | 중랑구 망우동 512-36 | | | |
| 9 | 444-6 | 전 | 161 | 161 | 전 | 윤천성 | 상 동 | | | |
| 10 | 446-16 | 답 | 29 | 29 | 도로 | 서울시 중랑구청 | | | | |

●강남구고시제1994-49호

도시계획사업(주차장)시행자지정

1.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1994-25호(94. 4. 28)로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결정 및 지적승인된 우리 구 논현동 112-22 외 5필지상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

정에 의거 도시계획 사업시행자를 지정하
고 도시계획법 제23조제6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 관련도서는 강남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5

강 남 구 청 장

가. 사업시행지위치: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12-22 외 5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주차장)

다. 사업시행의 면적 또는 규모: 대지면
적 1,43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서울특
별시 강남구 논현동 119 (주)나산백화
점 대표 홍순균

마. 사업의 신청기간: 인가일로부터 94.
12. 31

●성북구고시제1994-60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성북구고시 제1994-51호로 주택건설 사
업계획 승인된 성북구 4-2 외 85필지상 주
택건설 사업계획을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에 의거 변경승인하고, 동법 제32조의5 규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8. 25

성 북 구 청 장

1. 사업명: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성명: 전원산업(주) 대표 이 전
배, 두산건설(주) 대표 정한균
3. 사업주체 주소: 성북구 석관동 178-1,
강남구 논현동 105-7
4. 사업시행지(위치 및 면적·구조)

가. 위치: 성북구 석관동 4-2 외 86필지
(진입도로 15필지 포함)

나. 대지면적: 75,770.15㎡

다. 연면적: 266,376.30㎡

라. 규모: 아파트 16~25층 25개동 1,998
세대 및 부대 복리시설

마. 사업시행기간: 1994. 7~1998. 3

5. 변경사항

(단위: ㎡)

| 구 분 | 변 경 전 | 변 경 후 | 증·감 |
|----------|------------|------------|------------|
| 대지면적 | 75,369.00 | 75,770.15 | 증 401.15 |
| 연면적 | 273,523.46 | 266,376.30 | 감 7,147.16 |
| 건축면적 | 13,755.67 | 12,798.23 | 감 957.44 |
| 상가(201동) | 13,555.26 | 6,408.10 | 감 7,147.16 |
| 조경면적 | 22,210.00 | 22,341.63 | 증 131.63 |
| 건 폐 율 | 19.10% | 17.67% | 감 1.43% |
| 용 적 륜 | 283.98% | 278.09% | 감 5.89% |

구 공 고

●양천구공고제1994-113호

전문건설업상속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8. 25

양 천 구 청 장

| 건설업상속인가 내역 | | | | | |
|---|----------------|-----------------------------|--|--------------------------|--------------------------|
| 업종 및 면허번호 | 창호공사업 인천 08-31 | 상호 | 안산건설 | 대표자 | 최영복 |
| 면허일자 | 1983. 9. 28. | 소재지 | 서울 양천구 신정동 987-4 | | |
| 피상속인 | 성명 | 최영복 | 주민등록번호 | 380323-1051711 | |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515-303 | | | |
| 상속인 | 성명 | 유영자 | 주민등록번호 | 421006-2051710 | |
| |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은하마을 515-303 | | | |
| 상속인가일 | 1994. 8. 13 | | | | |
| <p>●강서구공고제1994-132호 도시계획사업(하수도)실시계획(안) 공람공고</p> <p>1. 서울특별시가 시설결정하고 서울특별시가 지적승인한 다음 도시계획시설(하수도)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코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하여 관계도서를 공람공고합니다.</p> <p>2. 토지(물건)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p> <p>3.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하수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여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하고 있으니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공고기간 내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4. 8. 25 강 서 구 청 장</p> | | | | | |
| 가. 사업개요 | | | | | |
| 사업명 | 시행구간 | 규모 | 사업기간 | 결정고시일자 | 지적고시일자 |
| 공항동 41 하수도 신설공사 | 공항동 41-136 | B=4m L=80m | 94. 9 ~94. 12 | 강서구고시 22호 (94. 4. 21) | 강서구고시 22호 (94. 4. 21) |
| <p>나.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p> <p>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생략</p> <p>라. 위치 및 계획평면도: 생략</p> <p>마.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p> <p>바. 공람장소: 강서구청 하수과, 건설관리과</p> <p>사. 기타 상세한 사항의 문의는 강서구청 하수과(600-641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 | <p>주택개발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 폐지및사업시행인가폐지공람공고</p> <p>1. 건설부고시 제470호(73. 12. 1)로 구역 지정되고, 서울시고시 제323호(78. 7. 4)도. 사업시행인가 및 서울시고시 제448호(79. 10. 23)로 1차 관리처분계획인가, 서울시고시 제270호(80. 7. 24)로 2차 관리처분 계획 인가된 주택개발 재개발 아현1구역 내 29블록, 30블록, 30-2블록, 36-1블록, 35-1블록, 아현 85-266 외 16필지 30블록 연립단독, 아현 85-158 외 10필지 상가, 아현 85-140 외 10필지 상가에 대하여 도</p> | | |
| ●마포구공고제1994-140호 | | | | | |

시재개발사업 30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규정,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폐지 및 사업시행인가 폐지코자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공람 공고합니다.

2. 재개발구역내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994. 8. 25

마 포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94년 8월 19일~94년 9월 17일(30일간)

나. 공람장소: 마포구청 주택과

나. 의견서 제출장소: 마포구청 주택과 및 아현1동사무소

라. 폐지되는 사업의 공람내용

1) 사업명칭: 아현 1-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2) 시행구역: 마포구 아현1동 29블록, 30블록, 30-2블록, 36-1블록, 35-1블록, 아현 85-266 외 16필지 30블록 연립단독, 아현 85-158 외 10필지 상가, 아현 85-140 외 10필지 상가

3) 시행면적: 5,481.52평

4) 시행기간: 95. 12. 31까지

5)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6) 공람공고 사유: 아현 1-1구역내 주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합동재개발 방법으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하기 위한 절차 이행임.

●구로구청공고제1994-162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를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69. 1. 18)로 시설

결정, 서고 354호(90. 10. 31)로 실효 및 재결정되고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구로구청 토목과

1994. 8. 25

구 로 구 청 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동 13-225~18-116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오류동 14-19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6m, L=70m

4) 사업시행자: 구로구청장

5) 사업시행일: 인가일로부터 2년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별첨

7) 토지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별첨

따로 불임: 토지 및 건물조서 1부

토 지 조 서

| 일련 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지적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 오류동 13-222 | 도로 | 98 | 동작구 흑석동 50-3 | 김한준 | | |
| | 13-186 | 도로 | 7 | " | " | | |
| | 13-223 | 대 | 1 | 구로구 오류동 13-185 | 최춘자 | 구로구 오류동 37-3 | 오류1동 새마을금고 |
| | 13-225 | 대 | 99 | 구로구 오류동 13-31 | 윤 준 | | |
| | 13-227 | 대 | 10 | 경기도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 692 | 전정복 | | |
| | | | | 구로구 개봉동 362-2 개봉동 1-101 | 전정만 | | |
| | | | | 인천 남구 용현동 627-105 한양용현2차동 102-703 | 전정일 | | |
| | 18-108 | 대 | 60 | 구로구 오류동 18-23 | 신민하 | 구로구 오류동 27-13 | 오 세 중 |
| | 18-119 | 전 | 102 | 동작구 흑석동 173-8 동궁빌 라 가-303 | 김덕호 | | |
| | 18-115 | 잡 | 1 | | 서울시 | | |
| | 18-116 | 잡 | 4 | 구로구 오류동 18-25 | 최아영 | | |
| | 18-118 | 대 | 19 | 구로구 오류동 59-26 | 이영규 | | |

●구로구공고제1994-163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3호(69. 1. 18)로 시설 결정, 서고 제354호(90. 10. 31)로 실효 및 재결정되고 지적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5조의2, 동법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구로구청 토목과

1994. 8. 25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163-7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고척2동 161-13~163-1간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8m, L=20m

- 4) 사업시행자 : 구로구청장
- 5) 사업시행일 : 인가일로부터 2년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
- 7)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43조제3

합의 규정에 의한 관련인 주소·성명 : 별첨
 따로 붙임 : 토지조서 1부

토 지 조 서

| 일련 번호 | 소재지번 | 지목 | 지적 (㎡) | 소 유 자 | | 이해관계인 | |
|----------|-----------|----|-----------|-------------|-----|-------|-----|
| | | | | 주 소 | 성 명 | 주 소 | 성 명 |
| | 고척동 163-7 | 전 | 132 | 구로구 고척동 산 3 | 경정호 | | |

●종로구공고제1994-177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
 공람공고

1. 우리 구에서 도시계획법 제11조, 제1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하고 관련 도서를 아래장소에서 14일간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 이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에는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종로구청(도시정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람기간 : 1994. 8. 18~1994. 8. 31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청 도시정비과(731-0385)

1994. 8. 25
 종로구청장

1)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 결정조서

| 구 분 | 시 설 명 | 위 치 | 면 적 | 비 고 |
|-----------|----------|------------------|----------|-----|
| 도시계획 시설결정 | 폐기물 처리시설 | 창신동 23-315 외 7필지 | 8,526.2㎡ | |

2) 도면 : 따로 붙임(종로구청 도시정비과 공람공고 도면과 같음 : 생략)

대여받아 면허를 취득함으로써 같은 법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면허취소하고 공고합니다.

1994. 8. 25
 서초구청장

●서초구공고제1994-267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

아래 전문건설업체는 국가기술자격증을

| 면 허 취소일 | 업종 및 면허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위 반 | 조 치 | 비고 |
|------------|-------------------|-------------|-----|---------------|---------------------------|----------------------------------|----|
| 94. 8. 17 | 철콘 92-서울-10-62 | (주) 심산기업 | 박석주 | 서초동 1592-2 | 국가기술자격 증을 대여받아 면허취득 | 면허취소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제3호 적용) | |

| 면허 취소일 | 업종 및 면허번호 | 상 호 | 대표자 | 소재지 | 위 반 | 조 치 | 비고 |
|-----------|--------------------|----------------------|-----|---------------|----------------------------|----------------------------------|----|
| 94. 8. 17 | 철물 92-서울-11-242 | (주) 정진안전 산 . 업 | 허삼도 | 서초동 1355-7 | 국가기술 자격 증을 대여받아 면허취득 | 면허취소 (건설업법 제52조 제1항제3호 적용) | |

●강남구공고제26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8. 25
강 남 구 청 장

| 인가 일자 | 양도업종 및 면허번호 | 양 도 자 | | | 양 수 자 | | |
|----------|---|-------------|------------------|-----|-------------|------------------|-----|
| | |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 | 상 호 | 소 재 지 | 대표자 |
| 94. 8. | 미장방수공사업 (충남 03-7) 도상공사업 (충남 05-22) | (주) 기린건축 | 강남구 논현동 130-9 | 구순희 | (주) 기린건설 | 강남구 논현동 175-4 | 최명덕 |

인 사 발 령

지방별정직(8급상당) 공무원 면직

●1994년 8월 16일자

영 제404호

| 연번 | 성 명 | 발 령 내 용 | 현 직 | |
|----|-------------------------|----------------|---------------|----------------------------|
| | | | 부 서 | 직 급 |
| 1 | 윤 춘 근 610426-1326611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상 수 도 사업본부 | 지방별정직 8급 상당 (환경관리기사) |

기능직공무원 면직

●1994년 8월 18일자

영 제405호

| 연번 | 성 명 | 발 령 내 용 | 현 직 | |
|----|-------------------------|----------------|---------------|----------------|
| | | | 부 서 | 직 급 |
| 1 | 김 덕 원 581002-1537934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상 수 도 사업본부 | 지방전기장 (7등급) |

| 연번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2 | 유현상 610224-1538011 |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 상수도 사업본부 | 지방전기원 (10등급) |
| 3 | 이지곤 680607-1006819 | " | 중량하수 처리(사) | " |
| 4 | 황대룡 640121-1770015 | " | 상수도 사업본부 | 지방위생원 (사역10등급) |
| 5 | 황영희 650925-1654716 | " | " | 지방조무원 (수도10등급) |
| 6 | 조유자 570124-2074121 | " | 서울대공원 관리(사) | 지방조무원 (검수표9등급) |
| 7 | 김창욱 580505-2029317 | " | 상수도 사업본부 | 지방사무보조원 (필기9등급) |

6급 행정직공무원 부직

●1994년 8월 19일자

영 제406호

| 연번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최진성 460209-1029619 | 부직을 명함 | 세종문화 회관 | 지방행정 주사 |

7급 이하 기술직공무원 정규임용

●1994년 8월 21일자

영 제407호

| 연번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1 | 고영준 660129-1558210 | 지방토목주사보 | 지하철 건설본부 | 지방토목 주사보시보 |
| 2 | 최철호 661201-1011135 | " | " | " |
| 3 | 백명기 681112-1899328 | " | " | " |
| 4 | 최병훈 660520-1114225 | " | " | " |
| 5 | 조영식 640125-1787511 | " | " | " |

| 연번 | 성명 | 발령내용 | 현직 | |
|----|-----------------------|---------|-------------|---------------|
| | | | 부서 | 직급 |
| 6 | 김규용 660405-1143510 | 지방토목주사보 | 지하철 건설본부 | 지방토목 주사보시보 |
| 7 | 권점수 690921-1658912 | " | " | " |
| 8 | 지윤구 660501-1173216 | " | " | " |
| 9 | 임대운 641003-1625819 | " | " | " |
| 10 | 명노준 680717-1462725 | 지방건축주사보 | " | 지방건축 주사보시보 |
| 11 | 이승재 650320-1067116 | 지방전기서기보 | " | 지방전기 서기보시보 |
| 12 | 이경수 680127-1558815 | " | " | " |
| 13 | 이용수 740521-1231011 | " | " | " |
| 14 | 박시현 650826-1804717 | " | " | " |
| 15 | 안호성 690228-1017721 | 지방기계서기보 | " | 지방기계 서기보시보 |